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신성범 · 조은희 · 김예지
이성권 · 김위상 · 박덕흠
최수진 · 이인선 · 서천호
엄태영 · 김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.

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,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,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·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, 선거관리위원

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6조).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현직 대법관
2.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이상(정무직을 포함한다)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6조제1항 중 “각 1人の 常任委員을”을 “상임위원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상임위원의 인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1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<u>리위원회 3명, 시·도선거관리 위원회 1명으로 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	--